



“구제역,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



대한한돈협회

우편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 ☎(02)581-9751/ Fax581-9769 농가지원부

문서번호 한돈협지 제310-2호

시행일자 2022. 01. 11.

수신 임원 및 각 지부(회)장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시간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가축분뇨 배출 허가 취소 관련 안내

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 18조에 따라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부(회)에서는 회원농가에게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여 가축분뇨 배출허가 취소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발생 시 중앙회 담당자(김하제 대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농가: 3년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농가

나. 관련 조항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